

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케이지에스앤씨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가 케이지에스앤씨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케이지모빌리티(주) : 케이지에스앤씨(주)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 (1) 상호 : 케이지에스앤씨 주식회사
 - (2) 본사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4. 합병기일 : 2024년 12월 30일
5.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와 케이지에스앤씨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24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나.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2일 ~ 2024년 11월 26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4년 11월 26일까지 케이지모빌리티(주) IR팀에 제출
(☎ 031-610-1371)
 -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4년 11월 21일까지 (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당사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케이지모빌리티(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케이지모빌리티(주)와 케이지에스앤씨(주)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4년 11월 00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2024년 11월 12일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대표이사 황 기 영